

'최초 위반자 대상 제도·경고처분 시범운영 결과에 따른 향후 계획 보고

□ 검토 배경

- 일관된 법집행, 수용성 제고를 위해 '1년 내 위반 이력이 없는 경미 위반자에 대하여 1회에 한해 제도'하는 개선계획 수립·시행('24. 1. 1. ~ 6. 30.)
- 제도의 안정적인 현장 안착과 무분별한 신고 등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6개월간 시범운영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시행 여부를 검토

□ 운영 기간

- '24. 1. 1. ~ 6. 30. < 6개월 >

□ 운영 내용

- 적용 대상: 위반일 기준, 이전 1년간 위반 이력이 없는 운전자
 - ※ 면허벌점의 경우 1년 경과 시 벌점의 효력이 없어지며, 착한운전 마일리지 또한 1년 단위로 갱신하는 점을 고려
- 이전 1년간 위반이 없을 시: 제도·경고 처분
- 이전 1년간 위반이 있을 시: 통고처분(또는 과태료) 처분
- 적용 범위
 - 공익신고 제보 건 중 위험성·중대성이 낮은 경미한 위반 행위
 - ※ 법인 및 렌트카는 소유주 변경 등 운전자가 확인되는 경우에만 적용
 - 도교법 위반 중 교통법 상에도 규정된 12개 위반항목*은 제외

< 교통법 12개 중과실 조항 >

① 신호위반 ② 중앙선침범 ④ 앞지르기 또는 끼어들기 위반 ⑤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⑥ 보행자보호의무위반 ⑨ 보도침범 ⑩ 승객추락방지의무 위반 ⑪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의무위반 ⑫ 적재물추락방지조치위반

※ ③ 속도위반 ⑦ 무면허운전 ⑧ 음주운전은 공익신고 처리 불가

□ 효과 분석

< 처리 기간 >

- 계획안 시행 이후 6개월간 제보 건을 처리하는데 월 평균 24.1일이 소요되는 등 전년 동기간 대비 17.8일이 늘었으나,
 - － △제보창구 통합운영(신문고 연계 중단) △1년 내 위반 이력이 없는 최초 위반자에 대한 경고처분 △범칙금항목에 대한 일괄 경고처분 등 전년과 비교 시 제도 및 시스템에 변화가 있으며,
 - － '23년 당시 안전신문고는 국민신문고와의 연계로 시스템상 처리기간이 7~14일로 설정, 기간 경과 시 관서 평가에 반영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스마트로 접수된 제보 건에 대해 지연처리가 이루어져 왔음을 고려했을 때,

단순히 산출된 월 평균 처리 일수만으로는 제도 시행 이후 제보 건 처리에 있어 소요 일이 증가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어려움

【최초위반자 경고처분 등 제도 개선 전·후 평균 처리소요 기간】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스마트 (일)	안전 (일)	스마트 (일)	안전 (일)	스마트 (일)	안전 (일)	스마트 (일)	안전 (일)	스마트 (일)	안전 (일)	스마트 (일)	안전 (일)
2024년*	20.8	9.5	17.3	12.5	12.8	15.6	-	19.2	-	20.8	-	16.2
2023년	14.6	1.0	14.1	1.1	13.8	1.4	16.3	1.5	19.0	1.7	20.9	1.8
대비	+6.2	+8.5	+3.2	+11.4	-1	+14.2	-	+17.7	-	+19.1	-	+14.4

* '24. 3. 11. ~ 안전신문고 통합운영에 따른 스마트국민제보 운영 중단

< 온라인 민원 >

- '1년 내 위반이력이 없는 자에 대한 1회 경고처리' 제도와 관련된 민원은 228건이 접수되는 등 공익신고 관련 민원의 54.3%를 차지
 - － 특히, 경찰청에서 접수·처리한 민원은 경찰서의 처분에 대한 제보자의 불만사안으로, 처분을 받은 당사자(위반자)의 민원은 확인되지 않음

【 경찰청(교통안전과)로 접수된 월별 공익신고 관련 민원처리 건수 】

구분		전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국민 신문고	전체민원(건)	330	46	34	59	53	37	68	33
	제도관련(건)	190	19	20	38	25	23	44	21
	비율(%)	57.6%	41.3%	58.8%	64.4%	47.2%	62.2%	64.7%	63.6%
정보공개 청구	전체민원(건)	90	18	15	12	12	13	6	14
	제도관련(건)	38	4	10	5	6	9	-	4
	비율(%)	42.2%	22.2%	66.7%	41.7%	50.0%	69.2%	-	28.6%

- (신문고) △ 경찰이 행사하는 훈방권(계도·경고)처분의 근거 △ 무조건적인 봐주기 △ 경찰의 범법자 양산 △ 처리자 ↔ 위반자간 유착관계 의심 등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과 함께 ‘제도처분’에 대한 불만 민원 제기
다만, 계도·경고처분에 대한 관서별 통일된 기준이 마련, 초행길 운전자들의 입장이 고려 되었다는 등의 긍정적인 반응도 확인됨
- (정보공개) ‘1년 내 위반이력이 없는 자에 대한 1회 경고처분 계획’ 추진 배경 등을 확인하고자 문서를 생산한 경찰청 대상 정보공개 청구

< 내부 의견 >

- 시행 초기 무조건적인 경고처분으로 민원이 급증할 거란 우려가 많았으나,
 - △ 처분결과에 대한 높은 수용성 △ 최초위반이 확인됨에 따라 즉각적인 계도·경고조치로 처리 체감속도 향상 △ 유연한 민원 응대* 등 계획안의 장점이 드러남에 따라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 * 계도·경고와 관련된 1차 답변이 이뤄지고 이에 대해 추가 민원이 이어졌으나, ‘본청 지침에 따라 ~’ 내용의 답변이 이뤄짐에 따라 관련 민원이 상당수 감소
- 시범운영 종료 이후, 상당수의 경찰관서에서 해당 제도를 지속 운영해 달라는 내용의 의견을 내부 메신저 등을 통해 표출

< 주요 성과 >

- 제도 시행 후 6개월간 계도·경고처분 처분은 상승하였으며, 과태료 부과는 감소한 것이 확인됨
- 비록, 과태료 부과율이 일부 감소하였으나 제보자들의 우려와는 달리, 여전히 전체 제보 건 중 절반 이상의 제보 건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가 이뤄지고 있음

【전년 동기간 대비 공익신고 전체 접수 및 처분 현황】

구분	전체 접수(건)	계도·경고(건)	비율(%)	과태료 부과(건)	비율(%)
2024 1. ~ 6.	1,657,620	572,924	34.56%	872,517	52.6%
2023. 1. ~ 6.	1,736,426	459,679	26.47%	996,620	57.4%
대비(%)	-78,806(-4.5%)	+113,245(+24.6%)	+8.09%	-124,103(-12.5%)	-4.8%

【반기별 공익신고 전체 접수 건 대비 과태료 처분 현황】

구분	22년 하반기	23년 상반기	23년 하반기	24년 상반기
전체 제보(건)	1,523,399	1,736,426	1,736,426	1,657,620
과태료 부과(건)	842,752	996,759	996,620	872,517
비율(%)	55.3%(-)	57.4%(+2.1%)	56.1%(-1.3%)	52.6%(-3.5%)

※ '22. 7. 12. 과태료 부과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 특히, 최초위반자 대상 1회의 계도·경고 처분은 재범자가 급격히 감소하는 등 제도를 계획·수립한 취지에 부합하는 효과가 확인되나,

【최초 계도·경고처분을 받은 자가 다시 위반으로 접수된 현황】

구분	1회(최초)	2회	3회	4회	5회 이상
2024 1. ~ 6.	324,002	40,391	9,264	2,876	4,356
2023. 1. ~ 6.	251,745	247,392	80,726	77,753	118,259
대비(%)	+72,257(+28.7%)	-207,001(-83.7%)	-71,462(-88.5%)	-74,877(-36.9%)	-113,903(-96.3%)

※ 최초 위반으로 계도·경고처분을 받은 자가 통계산출일(7. 31.) 內 재차 위반으로 접수된 경우임

- － 2회 이상 위반자에 대하여도 여전히 계도처분이 이뤄지고 있는 점은, 제보자가 제도의 취지를 긍정적으로 받아드리지 못하는 요소로 작용

【최초 계도·경고처분 받은 자에 대하여 재차 경고·계도처분이 이뤄진 현황】

구분	1회(최초)	2회	3회	4회	5회 이상
2024 1. ~ 6.	324,002	16,870	3,944	1,234	2,425
2023. 1. ~ 6.	251,745	243,350	36,715	34,431	33,403
대비(%)	+72,257(+28.7%)	-226,480(-93.1%)	-32,771(-89.3%)	-33,197(-96.4%)	-30,978(-92.7%)

※ 최초 위반으로 계도·경고처분을 받은 자가 통계산출일(7. 31.) 內 재차 접수되어 계도·경고처분을 받은 경우임

< 분석 결과 >

- 시범운영을 통해 긍정적인 효과가 입증된 만큼, 하반기에도 제도를 정식으로 운영하되,
- － ‘계도·경고 처분’이 횡수 제한 없이 계속 이뤄지는 점은 본 제도에 대해 제보자의 수용성이 낮아지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 계도·경고 처분에 대해 일부 수정·보완 후 운영할 필요성이 대두